

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4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5. .
제출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, 시민명예기자의 활동내용 및 활동수칙, 이벤트 참여자 보상 등의 내용 보완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정소식지 발행 및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둠(안 제6조의2에서 제6조의5)
- 나. 동별 1명 이상의 시민명예기자를 공개모집하고, 위촉된 명예기자 활동 수칙 등을 구체화하여 명시함(안 제7조에서 제9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6. 예산수반 사항 : 제2차 추가경정예산 요구(편집위원회 참석수당)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20년 5월 1일 ~ 5월 10일(10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홍보기획관 홍보미디어담당관

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장착”을 “정착”으로, “시정소식지(이하 “소식지”라 한다)”를 “시정소식지의 발행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) 하남시 시정소식지(이하 “소식지”라 한다)의 명칭은 “청정 하남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이 된다”를 “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.”를 “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단체 등에게”를 “단체, 다중이용시설 등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문 배달업체”를 “전문업체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소식지의 발행 및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소식지 명칭, 발행주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

2. 표지 구성 및 연간 기획 등의 방향
3. 소식지 게재내용의 적정성 검토
4.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

제6조의3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하남시 도시브랜드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신문 또는 사보,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고 언론·출판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(性)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의4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린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식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6조의5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

2.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
3. 품위 손상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
4.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7조제1항 중 “10명이내” 를 “동별 1명 이상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- ② 시민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문예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신문·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월 1회 이상의 취재 활동과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를 선발, 위촉하되, 현직 기자와 리포터는 제외한다. 이 경우 선발 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지필평가 및 면접 등의 전형을 거칠 수 있다.
- ③ 시민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주요활동 및 활동수칙) ① 시민명예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참석 및 취재
2. 시정, 관광, 먹거리, 미담사례 등 다양한 지역소식 발굴
3. 다양한 시민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 공유·전달
4.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
5. 그 밖의 시정홍보 활동

② 시민명예기자는 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, 사실 및 여론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.
2.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
3. 명예기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.
4.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

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제2호 중 “3월 이상” 을 “3개월 이상 연속하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 3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7조제2항에 따른 행동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4. 시민명예기자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사회적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이벤트 운영 및 보상) ①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.

1. 주요 시책사업 및 계획, 정책, 도시브랜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
2.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의 개최를 홍보·기념하고자 하는 경우
3. 시민 의견수렴 및 시정참여 독려를 위한 설문 및 의견 개선, 만족도 조사, 투표,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
4. 시정소식지 제작, 시민명예기자 활동, 도시브랜드 마케팅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
5.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현금, 상품권(모바일 기프티콘 포함),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0조 중 “는 시행에 관하여” 를 “의 시행에” 로 한다.

[별표]

보상 세부기준(제9조 관련)

구분	제공대상자 및 결정방식	1인/1건당 제공금액 한도	1회 운영당 제공금액 한도	연간 운영횟수
설문, 의견 개선, 만족도조사, 투표	응답자 중 추첨	1만원 이하	100만원 이내	20회 이내
인터뷰 응답, 퀴즈 또는 게임	응답자 중 추첨	1만원 이하	50만원 이내	20회 이내
아이디어 공모, 기타 이벤트 참여	심사 또는 추첨	3만원 이하	100만원 이내	10회 이내
시민명예기자 취재기사	월 1건 이상 기사 작성 시	월 5만원 이하	100만원 이내	12회 이내
전문기고 (칼럼, 일러스트, 카툰, 사진 등)	시장이 특정분야 전문가로 판단한 자의 원고 등 채택 시	20만원 이하	40만원 이내	5회 이내
독자 투고 (글, 사진 등)	일반시민의 원고 등 채택 시	3만원 이하	50만원 이내	12회 이내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혁신기획관
입안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
	팀장 직위 · 성명	브랜드마케팅팀장 이명화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나시내 (031-790-5332)

<p>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<u>전문 배달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	<p>----- <u>전문업체</u>----- -----.</p>
<p>제6조(편집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집팀을 운영할 경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신문, 사보, 잡지 등 간행물 발간업무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중에서 편집주간, 편집기자 등 3명 이내의 인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6조(편집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6조의2(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</u> <u>소식지의 발행 및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소식지 명칭, 발행주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</u> <u>2. 표지 구성 및 연간 기획 등의 방향</u> <u>3. 소식지 게재내용의 적정성 검토</u> <u>4.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</u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6조의3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은 하남시 도시브랜드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

	<p>③ <u>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신문 또는 사보,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고 언론·출판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(性)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/u></p> <p>④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6조의4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린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</u></p> <p><u>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<u>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<u>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식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6조의5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</u></p>

	<p>2. <u>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</u></p> <p>3. <u>품위 손상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</u></p> <p>4. <u>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
<p>제7조(명예기자) ① 시장은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<u>10명이내</u>의 시민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시민명예기자는 공개 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문예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언론·출판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.</u></p> <p>③ <u>시민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시민명예기자는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 수집 및 기사 작성 등 취재활동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	<p>제7조(명예기자) ① ----- ----- ----- <u>동별 1명 이상</u> ----- -----.</p> <p>② <u>시민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문예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신문·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월 1회 이상의 취재활동과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를 선발, 위촉하되, 현직 기자와 리포터는 제외한다. 이 경우 선발 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지필평가 및 면접 등의 전형을 거칠 수 있다.</u></p> <p>③ ----- 2년으로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
<p><신 설></p>	<p>제7조의2(주요활동 및 활동수칙) ① <u>시민명예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

	<p>1. <u>지역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참석 및 취재</u></p> <p>2. <u>시정, 관광, 먹거리, 미담사례 등 다양한 지역소식 발굴</u></p> <p>3. <u>다양한 시민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 공유·전달</u></p> <p>4. <u>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</u></p> <p>5. <u>그 밖의 시정홍보 활동</u></p> <p>② <u>시민명예기자는 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, 사실 및 여론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.</u></p> <p>2. <u>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</u></p> <p>3. <u>명예기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.</u></p> <p>4. <u>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8조(해촉) 시장은 시민명예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</u></p>	<p>제8조(해촉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3개월 이상 연속하</u> <u>연</u> -----</p>

<신 설>

<신 설>

3. (생 략)

제9조(보상) ① 시민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와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료를 보상 할 수 있다.

② 일반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되거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예산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시상품을 보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3. 제7조제2항에 따른 행동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4. 시민명예기자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사회적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

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제9조(이벤트 운영 및 보상) ①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.

1. 주요 시책사업 및 계획, 정책, 도시 브랜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

2.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의 개최를 홍보·기념하고자 하는 경우

3. 시민 의견수렴 및 시정참여 독려를 위한 설문 및 의견 개선, 만족도조사, 투표,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

4. 시정소식지 제작, 시민명예기자 활동, 도시브랜드 마케팅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

5.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현금, 상품권(모바일 기프티콘 포함),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-----의 시행에 -----.